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인테리어 공사 관련

- OO동은 100여 년 전 서민 분양을 위해 지어진 한옥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담 없이 벽을 공유하는 특징으로 방풍, 방습, 방음에 매우 취약하며, 험거운 가설물과도 같이 매우 취약한 구조의 사정을 잘 아는 시공주체가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초과하는 증개축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피해방지나 공사기간, 방법의 공지, 이웃 간의 양해 요청 없이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개업 후에도 수시로 소공사를 진행하다 종로구청의 행정조치로 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입은 다수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재정 신청을 함
- OOO의 모회사 OOO는 주거지역이던 익선동을 2015년부터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10여개 업소를 다발적으로 기획 및 개업하기 위해 한옥을 개조하고 지하층을 만드는 불법공사를 자행하다 발각되자 매몰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사와 철거공사가 연이은 과정에서 주변의 피해가 막대함
- OOO가 OO동 전체에 여러 업소를 연이어 개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되는 와중에 한 차례의 공지, 사전통지 없이 먼지, 진동, 굉음이 유발되는 공사가 강행되었으며, 제대로 된 가림막이나 물청소 등 최소한의 이웃에 대한 배려조차 없이 공사완료 시점에 대한 기약이 없는 6개월 동안 막연하게 고통을 받아야 했음
- 가정집 등 험거운 벽을 공유하는 양 옆 건물로 공사 진동과 소음이 직접 전해졌고, 빔을 자르고 땀하는 불꽃과 악취가 벽사이로 들어오고, 가림막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날아오는 먼지로 매우 힘들었으며,

공사 현장감독은 부재하거나 사장들에게 지시받은 대로 진행할 뿐이라며 청소나 가림막 보강, 개업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요청 등을 무시하는 불통으로 일관하였음

- 신청인 중 000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1~3차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을 배려하는 적법한 시공을 요청하였으며, 계속된 진동으로 인해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에는 서까래에서 떨어진 먼지와 돌들이 대대적인 공사 없이는 제거할 수 없게 쌓여서 매일의 생활이 공포와 불쾌함의 연속이었음
- 000 또한 공사가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와중에 실외기가 피해를 주는 식으로 잘못 설치되어 시정을 요청해야 했고, 수시로 감시와 건의가 없었다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영업 시작 후 문제들이 사후 발견되었을 것이라 함
- 000의 사무공간(00동166-8)은 서까래를 노출하여 000 상담 공간인데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먼지가 매일 쌓일 정도의 고통과 눈썹에는 항상 흙가루가 묻어 나오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최대 가동, 마스크 착용하는 등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현미경 등 고가의 장비수리와 큰 감가상각이 추후 예상됨
- 고객의 방문 상담에서 공사 피해에 노출되어 주문이 성사되지 않거나, 진동으로 인해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는 등 고가의 보석상담 영업 및 기성품 출시 불발 등 영업상의 피해가 심대하였음
-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하여 시공주체의 불법 한옥 증·개축에 항의와 양해 요청에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언론에는 '사람이 없는 죽은 동네를 살린다'고 홍보하여 재차 심적 고통을 주었음
- 신청인 대표 000이 공개적으로 항의하자 도리어 불법공사 지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억 이상의 징벌적 소가로 무리하게 제소하는 등 합법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발언마저 억압당한 정신적 고통을 피해액 산정에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 사업장 소음 관련

- 공사를 하여 개업하게 될 것이라면 피해의 주된 요인이 된 험거운 벽의 공유가 앞으로도 소음 전달의 주 요인이 될 것임을 거듭 피력하고,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묵살된 끝에 개업한 것은 방음시설 없는 디스코텍이었음
- 개업 후 OO 파티, 의류 브랜드 런칭행사 공간 대여 등 연이은 소음 유발 행사 개최로 대기자 사람들의 집요하게 들여다 보고 사진을 찍어대 당일 영업을 즉시 중단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 단기간의 상업적인 분위기로 호객할 관광객이 북적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의 소음이었기에 일반적인 층간소음 분쟁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초과하는 행사개최로 정온한 분위기를 변화시켜 상업공간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성이 특히 악질적임
- 지속적인 무방음 업장의 진동과 소음에 노출되어 구역질이 올라오고 OOO을 벗어난 후에도 음악감상이 어려울 정도의 이명이 유발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인간관계까지 위협받는 정신적 불안이 계속되고, 클럽 비트가 심해지면 상담이 중단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문 계약을 해지해야 했음
- 거듭된 언론 취재로 공사 내용의 불법성, 진행의 폭력성, 디스코텍 앰프로 인한 소음 가해에 대해 인정 후 원래 영업 목적이던 디스코텍의 스피커와 앰프를 제거하고 멕시칸 음식점과 칵테일바로 바꾸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방음이 되지 않아 정오부터 자정까지 울림이 심한 음악이 계속되고 있음
- 주민들은 현재에도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경찰에 소음 신고로 인해 역으로 영업방해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정온한 일상이 신속하게 파괴되고 분 업장의 간접 영업주체의 주도 하에 방송 촬영, 인스타 해쉬태그 이벤트 등으로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참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속에 이주, 이에 대한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합법 절차를 준수한 항의나 불만 토로마저 영업 방해로 명목으로 한 고소 위협으로 불통하며 끝내 소를 제기함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재정으로 배상받기를 원하며, 일반적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전환 목적으로 통상 변화가에서 트는 호객용 소음보다 목적이 매우 악질적이고 정도 또한 심각하였다는 점을 반영 요망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인테리어 공사 관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3개월(2017.2~4)로 단기간, 법령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 공사가 아니며,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없음
-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피해가 법령에 따른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는 불명이나 공사의 내용, 규모나 기간의 면에서 부정적하며
- 신청인이 제정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피신청인 공사의 불법은 환경피해와 무관한 건축법령 위반을 지적하거나 환경피해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입증 없음
- 신청인은 환경피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을 신청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피신청인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000가 신청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목적으로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함

○ 사업장 소음 관련

- 신청인이 주장한 주된 내용은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목적인 환경피해(소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주장이 있지 아니하고 피해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허위·과장·왜곡하여 표현하고 신청인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라 정확한 환경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음

- 또 대부분의 주장은 환경피해에 대한 것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피신청인 사업장 공사의 불법은 소음이나 진동과 같이 환경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법령이 아닌 건축법 등 다른 목적을 가진 법령 위반을 지적한 것임
-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산정한 금액도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너무나도 과도한 것으로, 같은 시기에 신청인측이 제출한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배상 청구금액인 300만원, 100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도 과도하지만 공개된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수십·수백배 이상 과도한 금액을 신청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임
- 신청인 측 중 000, 000의 경우는 피신청인의 사업장 좌우로 사무실 및 공방을 운영하며,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은 알 수가 없으나 사무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로 사업장 소재지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공방에서 금속제품을 깎거나 하는 등의 작업소음도 상당할 것으로 이들이 입은 환경피해가 과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지 여부는 극히 의심스럽다 할 것임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피신청인 측의 소음 유발 행사가 단지 1회 진행되었을 뿐이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지적함
- 또한 앞서 해당 행사는 피신청인 측이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장소를 대여하였던 탓으로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허위·과장·왜곡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행사 소음이 수인가능성을 넘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1회 행사였다는 점 역시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피해는 평소 영업장 소음과 2건의 행사(2017.4.28. 오픈 파티, 2017.6.10. 창신사 런칭 파티장소 대여)가 전부이며, 2건의 행사 소음은 피신청인 측이 측정한 소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수인가능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 바임
- 신청인의 환경피해를 근거로 관련성 없는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을 지적하며 피해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을 극도로 증오한 나머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목적보다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이러한 분쟁제도의 악용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대한 공격 수단은 2016년 3월부터 304건의 명예훼손 및 모욕적 게시물을 게재한 점, 영업형태가 1층만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인데 디스코텍 영업을 한다고 주장, 소송의 내용은 2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금 7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이 게재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 신청인의 방음시설 요구한 적은 없으며 대화를 한 적도 없음, 소음신고로 공무원, 경찰의 수시 방문에서 소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그간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음
- 일반음식점 운영자로 부동산 업자도 아니며 000 원주민을 쫓아낸 적 없으며, 사업장 음악소음은 자체 소음측정에서 53~58dB(A)로 빔 자르는 굉음은 아님
-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환경피해에 관한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본래 목적은 도외시한 채, 피신청인에 대한 가해의 목적을 위하여 조정제도를 이용한 권리 남용이라고 사료되며, 환경분쟁조정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신청이 부적법하고 또는 흠결을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라고 주장함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외부는 전통한옥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내는 상가 및 음식점, 카페 등 생활소음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전체가 정온한 생활환경은 아니며, 음식점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와 이후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이며, 신청인중 000은 현재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임

나. 신청인 사업장 건물현황

〈공 방〉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업지역 ○ 주소 : 00구 000로 ○ 구조 : 목조 ○ 규모 : 지상1층 ○ 용도 : 근생(일반음식점) ○ 건물연면적 : 54.51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업지역 ○ 주소 : 00구 000로 ○ 구조 : 목조 ○ 규모 : 지상1층 ○ 용도 : 주택 및 근생 ○ 건물연면적 : 87.14m^2(임차면적 7평)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업소명 : 000
- 소재지 : 00구 000로
- 업종 : 일반음식점
- 대표자 : 000
- 영업시작일 : 2017. 3. 7
- 사업장 면적 : 65 m^2

라. 피신청인 소음·비산먼지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미신고 대상
- 피해예방 대책
 - 공사 가림막
 - 사업장내 스피커 교체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공사 및 영업장 소음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 환경과로부터 소음저감 등의 행정지도(2017.5.26.)를 받은 사실이 있음

바. 사업장 생활소음 측정

- 측정일시 : 2017.11.22.(수) 15:24~36
- 측정기관 : 000청 환경과
- 측정장소 : 신청인 작업장(공방)
- 측정결과 : 1차 49, 2차 52.2dB(A)[기준:65dB(A)이하,상업지역,주간]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방법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공사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투입 장비의 종류를 파악하고 장비별 수음점 소음레벨을 산출한 후 합성 소음레벨을 산출하였음
- 건설장비의 소음레벨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016)’의 부록 중 ”공구류 소음도“를 참고하였음
- 작업이 완료되어 실제측정은 불가하므로 이격거리 10m에서의 투입

공구류의 소음레벨 기준과 창호의 차음량을 보정하여 신청인 부지 경계선의 소음레벨을 산출하였음

- 작업이 창호가 있는 실내에서 진행되므로 -15dB(A)의 보정치를 적용하였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장비 및 기계류의 소음진동도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2011)」의 289쪽 “7.3.5. 공구류 소음에 대한 피해 산정 제안” 참조

- 투입장비의 소음도는 별표 상에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소음도를 적용하고,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의 소음도를 적용하였음

- 피해기간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 전 기간에 대하여 주 6일 근무를 기준하여 산출하였음

※ 투입 건설장비의 소음레벨

장비명	규격	가동상태	등가소음레벨 (dBA)*	비고
파쇄함마	-	작업	67	해머드릴(중) 적용
컷소	-	“	69	
그라인더	7인치	“	77	
벽면커팅기	-	“	88	
용접기	-	-	-	평가제외
금속절단기		“	74	고속절단기 적용
파이프절단기		“	74	고속절단기 적용
파이프렌치		“	82	임팩트렌치적용
토치램프		-	-	평가제외
에어타카총		-	80	
컴프레샤		에어불기	65	
목재절단기		절단	63	지그톱적용
목재원형톱		목재절단	79	
직소기		절단	80	
에어스프레이건		가동	80	엔진식분무기 적용

주) 이격거리 10m에서의 등가소음레벨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2016)」의 별표 참조)

나. 소음 피해 평가

1) 공사 소음

○ 공종별 투입장비 현황 및 소음도

공종	일수	투입장비	동시작업 대수	이격거리 (m)	소음도 dB(A)	비고
터파기공사	-	삽	-	-		평가제외
철거공사 (2017. 2. 6. ~ 2017. 2. 10.)	5	파쇄함마	1	10	52	
		컷소	1	10	54	
		벽면커팅기	1	10	73	
		그라인더	1	10	62	
		기타 철거공구	-	-		
금속공사 (2017. 2. 11. ~ 2017. 2. 25.)	13	용접기	1	10		평가제외
		그라인더	1	10	62	
		금속절단기	1	10	59	
		기타 금속공구	-	-		
설비공사 (2017. 2. 20. ~ 2017. 2. 28)	8	그라인더	1	10	62	
		파쇄함마	1	10	52	
		컷소	1	10	54	
		파이프절단기	1	10	59	
		파이프렌치	1	10	67	
		토치램프	1	10		평가제외
		기타 설비공구	-	-		
조적공사	-	조적공구	-	-		평가제외
목공사 (2017. 3. 11. ~ 2017. 4. 1.)	19	에어타카총	1	10	65	
		컴프레샤	1	10	50	
		목재절단기	1	10	48	
		목재원형톱	1	10	64	
		직소기	1	10	65	
		기타 목재공구	-	-		
도장공사 (2017. 4. 1. ~ 2017. 4. 10.)	8	컴프레샤	1	10	50	
		에어스프레이 건	1	10	65	
		기타 도장공구	-	-		

○ **소음레벨 산출<공사소음>**

공 종	일수	평가소음도
터파기공사	-	평가하지 않음(삽 사용)
철거공사	5	73 dB(A)
금속공사	7	64 dB(A)
금속공사+설비공사	6	69 dB(A)
설비공사	2	68.9 dB(A)
조적공사	-	평가제외(소음원 확인불가)
목공사	18	70 dB(A)
목공사+도장공사	1	71 dB(A)
도장공사	7	65 dB(A)

○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초과소음도별 피해일수**

[단위: dB(A)]

공사	초과소음도(dB)별 피해일수				합계
	1이상~5이하	6~10	11~15	16~	
철거공사	5	0	0	0	5
금속공사	0	0	0	0	0
금속+설비	0	0	0	0	0
설비공사	0	0	0	0	0
목공사	0	0	0	0	0
목+도장	1	0	0	0	1
도장공사	0	0	0	0	0
합계	6	0	0	0	6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상업지역, 주간) : 70.0dB(A) 이하

2) 사업장 영업 소음

- 영업소음은 영업장 내의 음악이 주를 이루며 소음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생활소음의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영업소음을 평가하는 방법은 실측 자료를 기준하여야만 가능함

- 이벤트 행사과정에서의 스피커 소음에 관한 측정자료가 없으며, 동행인 및 관람객 들의 대화음과 뒤섞여 소음도를 예측할 수 없음
 - 관할 행정기관(종로구청)에서 소음을 1회(2017. 11. 22) 측정한 기록이 있으며, 배경소음 보정 전 측정치는 기준 미달이었음
 - 피신청인이 5,7,8,9,10월에 걸쳐 약 5개월간 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측정자료의 신뢰도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소음평가에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월별 신청인 사업장의 초과소음도 및 피해일수

월	초과소음도(dB)별 피해일수				합계
	1이상~5이하	6~10	11~15	16~	
5	0	0	0	0	0
7	2	0	0	0	2
8	4	0	0	0	4
9	0	0	0	0	0
10	0	0	0	0	0
합계	6	0	0	0	6

(주) 신청인 제출 「별천지 매장 소음도 측정일지」 기준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 65dB(A)이하, 상업지역(주간)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 55dB(A)이하, 상업지역(야간)

다. 진동 피해 평가

- 진동피해를 입증할 측정값 등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201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진동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별표 상에 공구류의 소음도만 표시하고 공구류 진동도의 기준 진동값을 정하지 않아 진동피해는 평가에서 제외함

라. 비산먼지 피해 평가

-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는 신청인이 “작업 중 발생한 진동으로 신청인 작업실에 먼지가 쌓였고 눈곱에는 흙가루가 묻어 나옴”이라고 진술하

였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한옥구조가 흙을 사용함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의 진동 영향으로 먼지의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음

4. 판 단

- 소음도 평가결과 공사 시 최대소음도가 73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을 3dB(A)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 자가측정 결과 영업활동 시 사업장 최대소음도가 59(A)로 수인한도 기준인 55dB(A)을 4dB(A)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에 사용된 공구류가 일으키는 진동의 영향을 판단하는 실측자료 및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판단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한옥의 특성상 흙을 사용하여 집을 건축함으로써, 공사 진동의 영향으로 흙이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000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 및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공사 소음기준(70dB(A), 주간) 및 사업장 소음기준(55dB(A), 야간)을 초과한 신청인 000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다만, 신청인 중에서 000은 거주가 아닌 사업활동으로의 공간을 활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자가측정하여 사업장 영업 소음이 초과한 밤 10시 이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장 영업 소음 피해 배상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피해기간이 7일 이내이므로 1월 배상액의 60%를 적용한다.
 - 공사과정에서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은 공사 소음피해액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손해배상액 산정
 -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 174,000원
 - ▶ 145,000원(6일/1월 이내) \times 0.6 = 87,000원
 - 87,000원 \times 2명 = 174,000원
 - ▶ 재정신청 수수료 : 520원
 - 87,000원 \times 0.3% = 260원 \times 2명 = 520원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 287,100원
 - ▶ 145,000원(6일/1월 이내) \times 0.6 = 87,000원
 - 87,000원+8,700(10%) = 95,700원
 - 95,700원 \times 3명 = 287,100원
 - ▶ 재정신청 수수료 : 840원
 - 95,700원 \times 0.3% = 280원 \times 3명 = 840원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61,1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360원을 추가하여 합계 462,460원이다.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